

교무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본 위원회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종합 심의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고, 대학 운영관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총장, 처장, 실장, 원장으로 구성하고, 기타 총장이 지명하는 교원 2명을 추가할 수 있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이 아닌 사람을 참석시킬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제반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개정 2007. 3. 1>
2. 입학·수료·졸업 등 학사운영 전반 및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07. 3. 1>
3. 교수회의 부의 안건 중 중요한 사항
4. 부설기관의 설치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운영에 관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7. 3. 1>

제5조(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6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무지원팀장이 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부 칙(2001. 1.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0. 6)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9.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2.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